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4. 14 선고 2016가합103258 판결 [매매대금청구에 관한
민사조정신청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3. 24.

판결 선고 2017. 4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. 12. 20.부터 2017. 3. 2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2006. 7. 28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270,000,000원에 매도하였고, 매매대금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6. 8. 2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7. 12. 20.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310,000,000원에 매도하였다.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20,000,000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12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50,000,000원(270,000,000원 - 120,000,000원)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7. 12. 20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인 2017. 3. 2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박헌행

판사조영민

판사이인수

별지